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



2025년 11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8 호

## 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### 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정액급식비	임직원	·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	매월 급여일 지급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유 경 ( 3 9 0 - 7 6 4 3 )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		
[별표 1] 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			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정액급식비	임직원	· 14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개 정 안			
[별표 1] 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			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정액급식비	임직원	·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	매월 급여일 지급